

경상북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경 상 북 도 교 육 청

경상북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709
----------	-----

제출연월일: 2017. 9. .

제 출 자: 경상북도교육감

1. 폐지 이유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2017. 2. 4.)되어 기존의 「학교보건법」에 따라 운영되었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가 폐지되고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경상북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를 폐지함

3. 폐지 조례안: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학교보건법」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17. 7. 31. ~ 2017. 8. 20.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사항 없음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경상북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 계 법 령】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등) ①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교육감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시책
2. 시행계획
3. 제6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
4. 그 밖에 관할 구역의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시·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시·도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교육청의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지명하는 사람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교육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및 강사
5. 그 밖에 지역별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④ 시·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1호에 따른 시·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시·도위원회 위원이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해임·해촉된다.
- ⑥ 제1항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⑦ 시·도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자료제출, 의견 진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⑧ 교육감은 제9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이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에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다만, 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시·도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 ⑨ 시·도위원회와 지역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5조(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학교보건법」 제6조에 따라 구성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는 제5조 제8항에 따라 구성된 지역위원회로 본다.

제6조(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학교보건법」 제6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제5조제8항에 따른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7조(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학교보건법」 제6조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위원은 제5조제9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지역위원회의 위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학교보건법」의 규정에 따른 임기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 학교보건법 (개정: 2016.2.3., 시행 2017.2.4.)

제5조 삭제 <2016.2.3.>

제6조 삭제 <2016.2.3.>

제6조의2 삭제 <2016.2.3.>

제6조의3 삭제 <2016.2.3.>

경상북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수반요인

-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로서 위원수당, 간담회 경비 등의 비용을 수반하고 있으나, 동조례 폐지로 인한 세출·세입 증감 요인이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경상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경상북도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경상북도의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23개 교육지원청에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을 심의 하는 위원회로서, 동조례 폐지로 인한 세출 및 세입에 영향이 없음

4. 작성자

- 체육건강과 보건6급 김광현(054-805-3463)

소관 담당관·과		체육건강과
입 안 자	과장 직위·성명	체육건강과장 장학관 이백효
	담당 직위·성명	보건담당 지방보건사무관 김동식
	담당자 성명·전화	지방보건주사 김광현(054-805-3463)